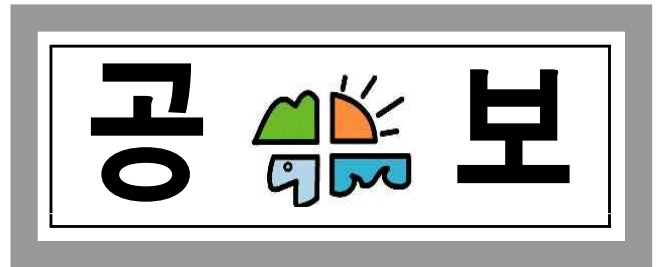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688호 2012년 3월 28일(수)

규 칙

-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 속초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4

공 고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8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용생 인

2012년 3월 28일

속초시규칙 제1283호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제2항중 “1인”을 “1명”
으로, “15인 이내”를 “15명 이하”로, “5인”을 “5명”으로 한다.

1. 행정·문화·체육분과위원회 :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속초시박물관, 의회사무과
2. 시정·생활·복지 분과위원회 :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3.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 희망일자리추진과, 해양수산물, 환경보호
과, 농업기술센터, 속초항물류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4.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속초
발전추진단, 설악동재개발추진단, 대포항개발사업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등) ① 조례 제17조 제2항에 의한 <u>분과위원회</u>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u>일반행정 분과위원회</u>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동 주민센터 2. <u>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u>: 주민생활지원실,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관광과, 보건소, 속초시박물관 3. <u>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u>: 교통행정과, 희망일자리추진과, 해양수산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속초항물류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4. <u>지역개발 분과위원회</u> :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속초발전추진단,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자원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위원의 수는 1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등) ① 조례 제17조 제2항에 의한 <u>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u>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행정·문화·체육분과위원회</u>: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속초시박물관, 의회사무과 2. <u>시정·생활·복지 분과위원회</u> :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 3. <u>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u> : 희망일자리추진과, 해양수산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속초항물류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4. <u>지역개발 분과위원회</u> :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속초발전추진단, 설악동재개발추진단, 대포항개발사업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위원의 수는 1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용생 인

2012년 3월 28일

속초시규칙 제1284호

속초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1의2의 징계부과금기준”을 “별표1의 징계기준과 별표1의2의 징계부과금기준 및 별표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별표5”를 “별표 1의3”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는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음주운전 마.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u>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과금기준</u>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u>별표 4와 별표 5</u>를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u>별표 1의 징계기준과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 및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u>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u>별표 4와 별표 1의3</u>를 각각 적용한다.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3. 28. ~ 2012. 04. 10.(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과 목	부과액 (원)	내 용	송달불능 사 유
김재성	속초시 변영로 170, **2호 (영랑동, 동진리조트오피스텔)	이행강제금	194,010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김은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성길 1**	"	1,224,270	"	"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4항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도시디자인과(☎033-639-2457)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 3. 28.

속 초 시 장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인), 연락처 속초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담당
- 연 락 처 : 033) 639-2457